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증기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3년 7월 24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7월 12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3년 7월 14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1993년 7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가. 제안 이유

남구의 발전과 함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대내, 외에 남구를 빛낸
구민을 발굴 표창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시행하고 있는 오륙도상의
시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오륙도상은 3년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구의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이나 기관, 단체 등에 시상하며,
시상 부문은 봉사, 효행, 선행, 문화, 균검, 절약 등 부문별로 표창할 수
있음.
-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할 수 있음.
- 시상 인원은 부문별로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부산직할시 남구 포상 조례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구민, 외국인, 기관, 단체 등에서 대외적으로 남구를 빛낸 경우 이를 표창하므로서 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이를 전 구에 확산시켜 나아간다는 것이 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할 수 있는바 현 조례에 의하면 우리구의 포상의 종류는 질서상, 감사장, 상장, 모범 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 보면 오륙도상을 추가하였고,

오륙도상에는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문화상, 근검 절약상 등으로 구분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구민에게는 봉사상,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효성이 지극한 자에게는 효행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선행을 한 자에게는 선행상, 구민의 문화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여한 자에게는 문화상, 근검절약 정신이 생활화 된 자에게 근검절약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아지며 또한 공정,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했을때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이는 우리 주변에서 선행을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려 구민들에게는 귀감이 되도록 하고, 본인에게는 영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는 매우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로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본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한성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 종류중에서 상장, 감사장등이 있으므로 봉사를 잘하면 봉사 내용을, 근검절약을 잘하면 근검절약 내용을 삽입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오류도 상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제도나 조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일려고 애를 쓰는 현 시점에서 감사장, 상장, 표창, 질서상 등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오류 상을 신설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행이나 선행을 한 자에게는 상장이나 감사패, 감사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구민이 주는 상으로 남구의 상징인 오류도 명칭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 남구에서 가장 큰 상임. ○ 오류도는 남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여 발굴, 보급하자는 것임.
문덕복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은 어떤분으로 구성하는가? ○ 20명의 심사위원 정관이나 규정은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0명 정도로 언론인 학계, 문화 예술계, 여성단체 구인사 위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망라함. ○ 규정은 없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계를 망라했음.
배종환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의 심사위원 수당은 1인당 얼마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 지급 조례가 있음. 수당은 민간인에게만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 금액은 2만원내지 3만원 정도임.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배종환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도상을 몇사람이나 주는데 심사위원이 20명이나 됩니까? ○ 심사위원을 20명이나 할 필요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부문에 10명을 줌. ○ 작년에 20명 정도를 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20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임.
임종하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명목상의 이름을 자꾸 정해가지고 하지 말고 뭐든지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구에도 구를 대표하는 상이 있음. 우리구에서도 남구를 대표하는 큰 상이 만들어져야 될 것임.
박수용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도상의 본상과 장려상의 구분은? ○ 20명 심사위원중에서 공무원과 민간인 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 어떻게 조정할 예정인지? ○ 돈은 지출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의 점수 100점 만점에 90점이상 본상 85점이상 장려로 구분하며 85점이하는 해당이 안됨. ○ 작년에는 선행상, 저축상, 효행상에는 본상은 없고 장려상만 있었음. ○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작년에는 언론인 2명, 학계 예술계 7명, 여성단체 2명, 구인사위원회 6명, 해당동장 3명등 20명이었음. ○ 예산 편성이 안되면 줄 수 없음.
이태흠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도상은 3년이상 남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상을 줄 수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도 해당됨.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이태희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단체는 여기에 해당 안되는지? ○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꾸준하게 남구를 위해 선행을 하면 되지 너무 국한하면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에 남구에와서 한 두번 선행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어 남구에 살면서 꾸준히 선행을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남구에 오래 거주하면서 선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생각함.
배종환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만 심사 위원으로 구성해도 맞지 않고 민간인을 포함한 20명은 시상금 보다 심사위원 수당이 더 많이 나가므로 상세한 안을 가지고 차기에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20명이 많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 (3-5명 정도)

5. 토론 요지

가. 찬성 (조해수위원)

- 현재 오륙도상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으며 3년이상 거주자에게 수여 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아지며 본 오륙도상을 만들어 우리 구를 위해 희생을 하는자에게 남구 최고의 상인 오륙도상을 주는 것이 뜻이 있다고 보아짐.

나. 반대 (박한성위원)

- 오륙도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남구에서 주는 포상의 종류가 질서상, 감사장, 상장, 모범 공무원에게 주는 표창 등이 있으므로 오륙도상 내용에 포상할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문화상, 근검절약상을 삽입시켜서 시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부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6.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표결결과 : 참석위원 10명 중 찬성3명, 반대6명, 기권1명)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